

제 46 호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4년 11월 29일까지 신고 바랍니다.
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제2동 담당자 : 장민주 문의전화 : 02-330-8592

성명 생년월일	주소	지연 신고사항
박 *빈 1997-01-23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길 (홍은동)	무단전출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

2024년 11월 22일

홍은제2동장

